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37
----------	-----------

제안년월일 : 1999년 12월 24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황의형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시 기존 쓰레기 봉투의 재질 및 모양이 개정될 조례안의 내용과 불부합하여 개정조례안과 상충되는 바, 기존 쓰레기 봉투의 재질 및 모양을 개정조례안 내용을 준용토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칙 조항을 신설함.
(안 부칙 제2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 판매되</u> <u>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u> <u>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u> <u>본다.</u>